

의안번호	2124002
의 퇴 인	하태경의원
회 답 일	2023.09.18.
추계번호	23D36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4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¹⁾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연계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4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정보의 연계(안 제74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제74조에 근거하여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으로 24억 3,400만원 편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경찰, 소방, 군, 지방자치단체 등 102개 재난기관에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망용 주파수 관리, 단말기 등록, 기지국 등 시설 유지보수 등을 실시
-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연계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연계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
- 다만, 연계 대상 정보의 평균 규모, 해당 정보의 저장 및 처리 등에 필요한 기존 시스템의 확대 여부 및 범위, 정보의 통합관제를 위한 인력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정보를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용(통합관제인력의 인건비 등)은 2022년 기준 총 3,616억 4,300만원

[표 1]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 2022.12.31.기준

시도	합계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소계	인건비	통신 회선요금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	소계	CCTV	관제 시스템
계	361,643	257,544	138,223	97,953	18,743	2,625	104,099	67,867	36,232
서울	37765	18,847	10,470	5,570	2,566	241	18918	13,163	5,755
부산	14124	12,432	10,656	1,247	454	75	1692	822	870
대구	15241	12,519	7,576	4,323	527	93	2722	1,470	1,252
인천	19048	12,631	5,766	5,834	996	35	6417	6,388	29
광주	7499	6,445	2,888	2,949	608	-	1054	602	452
대전	5041	3,759	2,405	1,195	157	2	1282	903	379
울산	7767	5,582	2,480	2,627	386	89	2185	1,605	580
세종	1544	1,000	-	549	391	60	544	523	21
경기	72192	43,161	18,929	18,729	4,721	782	29031	20,594	8,437
강원	15768	11,833	5,198	5,426	1,115	94	3935	2,246	1,689
충북	17331	13,446	6,657	6,043	677	69	3885	2,279	1,606
충남	26145	20,060	11,573	6,999	955	533	6085	2,980	3,105
전북	14062	10,631	5,846	4,260	450	75	3431	2,567	864
전남	27961	21,411	12,060	7,925	1,251	175	6550	3,221	3,329
경북	43612	34,705	20,082	12,665	1,833	125	8907	4,839	4,068
경남	32999	26,695	15,437	9,748	1,335	175	6304	3,126	3,178
제주	3544	2387	200	1,864	321	2	1157	539	618

자료: 행정안전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오명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